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4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2일

3. 제안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 등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,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목적(안 제1조)

나.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

-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 등

다.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·서기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- 회의의 소집권자·방법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

라.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 등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5. 검토내용

-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의 2022. 6. 10. 개정 사항을 보면,
 -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면서(법 제91조 제2항),
 -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서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(법 제91조 제4항).
-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)은 2023. 6. 9. 개정을 통하여 지명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정원, 위장장·부위원장·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사정족수·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령 제88조).
-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·도 지명위원회 조례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함.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현행 조례의 목적·위원회 구성 등 모든 조문이 개정 대상이고,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경우로,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24. 3. 15.~'24. 4. 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이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면서 시·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,
- 국토교통부의 시·도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맞춰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